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69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유상범·박충권·김석기
구자근·권영세·송석준
엄태영·임종득·곽규택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

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기피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과반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 ② (생 략)	제15조(고발)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 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 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 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 을 거부 · 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u>과반수</u> 의 연 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③ ----- ----- ----- ----- ----- ----- ----- <u>3분의 1 이상</u>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